

## 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40 퇴직연금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□ 변경 사항 : ①채권 운용전문인력 변경(신흥섭→ 전춘봉)

②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
③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 : 2020. 7. 22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0.5.31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	채권 책임운용인력 : <u>신흥섭</u>  2020. 4. 30. 기준	채권 책임운용인력 : <u>전춘봉</u>  2020. 6. 30. 기준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채권운용 책임운용역 변경	-	<u>2020.7.22 : 채권운용 책임 운용역 변경(신흥섭 → 전춘봉)</u>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변경  최근 기준으로 기재	채권 책임운용인력 : <u>신흥섭</u>  2020. 4. 30. 기준	채권 책임운용인력 : <u>전춘봉</u>  2020. 6. 30. 기준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]	채권 모투자신탁 운용전문인력 변경  최근 기준으로 기재	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 [채권] : <u>신흥섭</u>  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: <u>양진모</u>  2020. 4. 30. 기준	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 [채권] : <u>전춘봉</u>  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 [채권] : <u>전춘봉</u>  2020. 6. 30. 기준


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운용전문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	채권 책임운용인력 :신홍섭 2020. 4. 30. 기준	채권 책임운용인력 : 전춘 봉 2020. 6. 30. 기준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운용전문인력 변경	-	2020.01.09~2020.07.2 1 : 신홍섭 2020.07.22~현재 :전춘봉
13. 보수 및 수수료에관 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 되는 보수 및 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0.5.31 기준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20. 4. 30 기준	2020. 6. 30 기준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나. 주요 업무 (3) 업무위탁 ② 수익자명부 작성업무 의 위탁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한국예탁결제원	전자등록기관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 등 (3)수익자총회 결의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	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 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 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 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 니다. 다만,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 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.	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 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 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 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 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 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 습니다.

---

습니다.

-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/ 신탁업자의 변경 /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 /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/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/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) / 집합투자업자 변경 /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/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/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〈신설〉

-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/ 신탁업자의 변경 /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 /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/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/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) / 집합투자업자 변경 /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/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/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- 다만,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

---

야 함

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증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

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

3.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에 동의하거나, 신탁업자가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

- 위의 사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제 5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함

1. 대상금액 :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수익자총회 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순자산총액과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대비용(자문료, 시스템개발비 등)을 포함

2. 대상기간 : 변경 시행일로부터 1 년간. 단,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

---

			<u>합</u> <u>-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</u> <u>자는 위의 보상 등 과는 별</u> <u>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</u> <u>수익자를 상대로(법제 190</u> <u>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</u> <u>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</u> <u>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</u> <u>로 한다) 손해배상을 청구</u> <u>할 수 있음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 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2) 자산운용보고서 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 서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<u>한국예탁원</u>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</u> <u>방법으로</u>	<u>전자등록기관</u> <u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</u> <u>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</u> <u>로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 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1) 신탁계약변경에 관 한 공시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<u>한국예탁원</u>	<u>전자등록기관</u>